

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, 2019회계연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예산전용 내역 : 총 1건, 100,000천원

- 사무관리비(201-01) → 시설비(401-01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전용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					2,177,000	100,000	100,000	2,177,000
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	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(도시개발 특별회계)	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	인건비(101)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(04)	6,859	-	-	6,859
			보상금(301)	가타보상금(12)	30,000	-	-	30,000
			업무추진비(203)	시책업무 추진비(03)	10,000	-	-	10,000
			시설비(401)	시설비(01)	1,450,000	100,000		1,550,000
			일반운영비(201)	사무관리비(01)	680,141	-	100,000	580,141

전용사유

- 당초 동서울터미널 및 성동구치소 사전 협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책정된 사무관리비 예산 1억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상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 지연이 예상되는 반면
- 역사도심 내 저이용, 장기간 방치된 민간 대규모 부지의 공공성이 있는 부지 활용에 대한 선제적 활용계획(도심내 민간 대규모 부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) 필요
-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 구상 용역 발주가 긴급하여,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(1억원, 사무관리비)을 시설비로 예산 전용